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6.(생 략) 7. 환매조건부 매도 8.~10.(생 략) ②(생 략)	**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**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~6.(현행과 같음) 7. 환매조건부 매도 및 매수 8.~10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	**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**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.
<신 설>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